

민간주도형 안전인삼 유통체계 구축사업 모집 공고

안전인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「2025년 민간주도형 안전인삼 유통체계 구축사업」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1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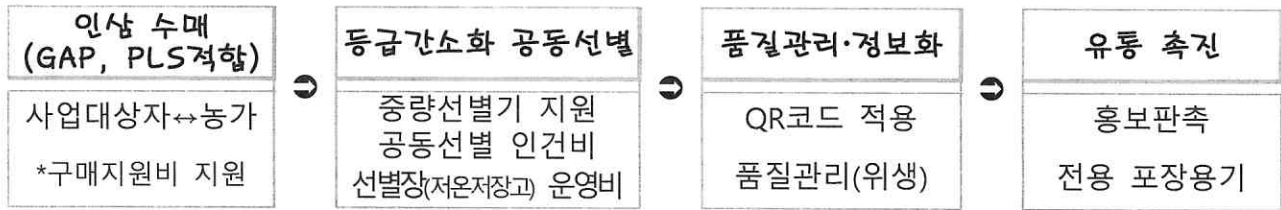
(재)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



1 공모 개요

- (사 업 명) 민간주도형 안전인삼 유통체계 구축사업
- (공고기간) 2025. 4. 1.(화) ~ 4. 14.(월)
- (사업기간) 2025. 4. ~ 2025. 11.(8개월)
- (사 업 비) 금500,000천원(보조 50%, 자부담 50%)
 - ※ 지원금은 250백만원,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며 사업주체 부담
- (지원규모) 1개소
- (지원대상) 금산 관내 농협, 수출 및 온라인도매 전문법인
 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우대
- (지원내용) 안전인삼 유통체계 구축 관련 비즈니스 모델 발굴
 - 사업주체를 통한 GAP인증·PLS적합 안전인삼에 대한 계약수매·공동선별·등급간소화 등 안전인삼 통합 유통체계 구축

○ (추진방향)



- (지원항목) ①안전인삼 구매지원 ②중량선별기(2기) ③공동선별 인건비
④선별장저온저장고 운영비 ⑤코드(QR)형 실명정보화(인쇄가라벨)
⑥품질관리 위생용품 ⑦전용 포장재 제작 및 홍보판촉비

- (지원 범위) 관내 인삼 생산자가 관내외에서 경작한 GAP인증 인삼 및
PLS 안전성 검사 적합한 일반 인삼 **최대 100톤 수급 안정화**

○ (안전인삼 수매조건)

- ① 순위 : 관내 경작자가 생산한 관내외 **GAP인증 인삼**
② 순위 : 금산에 주소를 둔 미인증 인삼경작 농가가 생산한 관내외 **PLS 안전성 검사 적합 인삼**
※ **GAP 인증인삼(1순위) 수매 비율이 60% 이상 충족 必**
※ **2순위 해당 농가**는 사업신청시 **GAP인증 신청서 제출**(GAP인증 전환 촉구)
※ 수매 시 GAP인삼 및 PLS **안전성 검사 성적서**, 수매 대상 전체 매입량 등 **매입 관련 증빙 자료(수매확인서) 필히 제출**

2 신청 · 접수 방법

- (접수기간) **‘25. 4. 1.(화) ~ 4. 14.(월) 17:00 까지**

※ 접수마감일 17:00까지 제출한 서류만 인정

- (접수방법) **방문 접수**

- (접 수 처) (재)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(2층) 선진유통TF팀

- (문 의 처) 선진유통TF팀 ☎ 041-750-1613

3

평가 · 선정방법

○ (평가 및 선정방법) 평가·심의를 통하여 선정(대면평가)

구 분	선정절차 및 기준
대면 평가	(선정심의회위원회) 외부인 3인 이상으로 위원회 구성 후 선정 평가 (심의내용) 추진계획서 심사(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) → 사업계획의 적정성(30점), 사업 수행능력(30점), 예산의 타당성(10점), 자부담 금액(수매 장려금)(20점), 지원효과(10점) 등 항목 평가

○ (선정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) 유·무선 개별 통지

○ 지원제외(*기준: 신청서 제출일)

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: 제외
-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 지원 불가

○ 제출서류

- ① 신청서 및 추진 계획서, 참여확약서
- ② 사업자등록증명원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
- ③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
- ④ 매출 증빙 서류(전년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신고서)
- ⑤ 자부담 확보내역(현금 잔액증명서, 정기예금증서(신청일 기준))
- ⑥ 법인 등기부등본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(3개월) 이내 발급분)

4

지원금 지급 및 정산

○ (지원금 지급) 협약 금액(지원금)의 70% 선지급, 사업종료 후 정산
서류 검토 후 잔여 지원금(30%) 지급

※ 협약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시 70% 지원금 선지급(미 제출시, 정산 후 지급)

○ (지원금 정산)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검토 잔여 지원금 지급

□ 중요재산 사후관리

○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 적용

- 중량선별기의 경우 '주요기계, 장비'로서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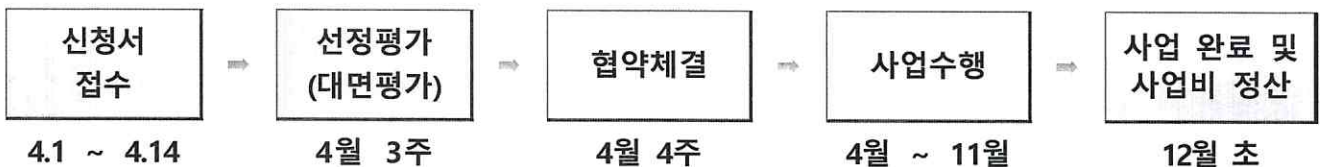
참고사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기준

중요재산	사후관리기간		처분 제한 기준
	부터	까지	
■ 부동산	등기일	10년	매각,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 금지 * 보조결정 시 사업대상자 사전안내
■ 부동산 종물 (고정식 기계·설비 등)	설치완료일	7년	
■ 주요기계, 장비	납품일	5년	

○ 지원기계(장비)의 관리상태, 활용상황 등을 진흥원에서 5년간 점검 (반기별 1회)하여 관리카드에 기록 및 비치

5

사업 추진 일정



6

사업추진시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미제출시 신청포기로 간주함
- 지원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
- 사업대상자의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,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금을 회수하고 향후 지원사업에 제외될 수 있음

- 붙임 1. 사업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양식 1부
2. 참여의사 협약서 양식 1부